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최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
----------	----

발의연월일: 2026. 8. 25.

발 의 자: 최상진 의원

공동발의자: 최옥주 의원, 김성호 의원,
이혜숙 의원, 강정선 의원,
박순옥 의원, 유미현 의원,
김언주 의원, 조용근 의원,
박지효 의원, 채승우 의원,
이희승 의원, 김안나 의원,
이승희 의원, 박성희 의원,
이원우 의원, 박지선 의원,
손병화 의원, 위정희 의원,
전 정 의원, 박인섭 의원,
지정수 의원, 박순례 의원,
김서윤 의원, 이강무 의원,
정성일 의원, 정동배 의원

1.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2. 조사목적

- 최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추진 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을 비롯하여 인사 채용 및 조직 운영 관련 공단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의 일련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하고, 법령 및 규정 위반 여부를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제출된 조치결과의 적정성 및 이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과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함.

3. 조사대상범위

가. 조사대상기관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송파구청 관련 부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업무 관련 부서)
- 위원회 의결로 채택된 증인·참고인

나. 조사대상사무

- 인사 채용, 조직 운영 및 회계 집행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이행 실태
- 송파구청의 적절한 관리·감독권한 행사 여부
- 상기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위에서 의결한 구체적 조사 항목(단,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은 제외함)

4.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 특위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 13명 이내
- 활동기간: 구성일로부터 6개월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휴회 중인 때에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에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에 따라 감사계획서에 의하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조(행정사무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는 영 제43조에 따른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삭제

제4조(사무보조)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조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협조토록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조임무 이외에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직접 참여 할 수 없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송파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송파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송파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송파구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6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 삭제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송파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일 또는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별지 1의 선서문을 일어서서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삭제

제8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의 활동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대상기관에서 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 ③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의 고발을 사건 발생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13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거나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